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77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윤창현ㆍ하영제ㆍ조수진

권은희 • 권영세 • 이채익

유한홍 • 이주화 • 홍준표

김용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 데 코인을 이용한 사기, 먹튀 거래소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현실 화 되고 있음.

현행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에 대한 주무부처도 없고, 가상자산이 자산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

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으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5조제1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5
계산할 때 <u>2022년 1월 1일</u> 전	<u>2023년 1월 1일</u>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u>2021년 12월</u>	<u>202</u>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u> 2년 12월 31일</u>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2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	

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 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 4. (생략)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같은 조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u>2023년 1월 1</u>
<u>일</u>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2023년 1월 1일

개정규정은 <u>2022년 1월 1일</u>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u> 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u>2023년 1월 1</u>
일
<u></u>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u>о</u>)
②
<u>2023년 1월 1일</u>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u>2023년 1월 1일</u>
·.